

2021년도 제1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2.(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2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44건(안건번호 제2021-59903호~6058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59903호~59923호(순번 1번~21번)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서 다수의 일본과 미국 영상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59924호~59925호(순번 22번~23번)는 티스토리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영상물 없이 우리말 자막 파일만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 파일은 이용자들이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로 판단되는 부분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59926호~59942호(순번 24번~40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84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2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3쪽의 사이트명, 4쪽의 게시자명, 저작물명, 가수명, 반주기기명, 회사명, 멤버십명, 5쪽의 회사명, 사이트명 6쪽, 7쪽의 회사명, 9쪽, 10쪽의 불법사이트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C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는 반주기기명, 게시자명, 사이트명, 가수명, 불법사이트명, 저작물명, 회사명, 멤버십명 등을 특

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A, C, B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94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21번은 민원인 4명의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이용자가 다수의 일본과 미국 영상물을 각각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58건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974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순번 12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20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였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

속하여 보여주면서)현재 비공개글로 전환되었음. (‘ㄹㄹㄹㄹ ㄹㄹㄹ
ㄹ’ 게시판 내의 ‘ㄹ ㄹㄹㄹㄹ ㄹㄹ ㄹㄹ’ 게시글을 보여주면서)게시
자는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들이 비공개 처리되어, 새로운 블로그에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면서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였음.
(순번 2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
물의 시즌2의 5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순번 일부의 경우 2021. 5. 27. 현재 비공개 글로
전환되어 있으나,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
용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다수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
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2번~23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티스토리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ㄱㄱㄱ ㄱㄱㄱ ㄱㄱㄱ ㄱㄱㄱㄱ ㄱㄱㄱ' 1화~7화, 'ㄱㄱ ㄱ ㄱㄱㄱㄱ' 1화~5화 자막 파일(smi)을 영상물 없이 게시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12건임.

'ㄱㄱㄱ ㄱㄱㄱ ㄱㄱㄱ ㄱㄱㄱㄱ ㄱㄱㄱ'는 일본 ㄱㄱㄱㄱ에서 2021. 4. 5.부터 현재 방영 중이며, 우리나라 ㄱㄱㄱㄱㄱ에서 2021. 4. 7.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화당 700원에 대여, 1,500원에 구매 가능함.

'ㄱㄱㄱ ㄱㄱㄱㄱ'는 일본 ㄱㄱㄱ ㄱ ㄱㄱ에서 2021. 4. 12.부터 현재 방영 중이며, 우리나라 ㄱㄱㄱㄱㄱ에서 2021. 4. 14.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화당 700원에 대여, 1,500원에 구매 가능함.

국내 합법 시장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모두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심의대상 게시글 및 티스토리에서 다수의 광고가 확인됨.

(순번 2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7화 자막 파일이 게시되어 있으며, 다수의 광고 배너가 게시되어 있음. (smi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여 보여주면서)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말 대사가 구간별로 싱크가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순번 2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 자막 파일이 게시되어 있으며, 순번 22번과 유사한 구조임. 광고 배너가 다수 게시되어 있음.

심의대상 자막 파일의 이용은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시정권고 판단의 적극적 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이견은 없음. 다만, 우리 심의위원회가 자막 파일의 시정권고 여부 판단 시 소극적 요소로 활용하는 자막 파일의 2차적저작물성 여부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작성된 파일에 대하여 법상 독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2차적저작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임. 만약 2차적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를 시정권고 대상성 판단의 소극적 요소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논의해 볼 수 있겠음.
- B 위원: 사안의 경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확립한 심의 기준에 따라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가 다수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 파일은 영상저작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2번~23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4번~4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29건임.

11번가, 옥션,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에서 'EV PAD' 또는 'EV BOX'라고 불리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이하 '본건 기기'라고 함)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본건 기기의 자세한 작동원리 및 기능은 보호원의 과학수사지원부에서 작성한 "불법유통 셋톱박스(EV BOX) 기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순번 26번, 40번 심의대상 URL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본건 기기의 언어 설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본건 기기의 판매행위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행위임이 인정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건 기기의 판매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며,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시정권고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C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4번~40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41번~68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84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만화 '리쿠도'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2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리쿠도'를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1화부터 234화까지 jpg파일로 제공함. 일본 슈에이샤에서 2014. 9. 19.부터 2019. 7. 19까지, 우리나라 대원씨아이에서 2015. 12. 22.부터 2021. 1. 15.까지 총 25권 발간됨. 이미지 내 불법사이트 워터마크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재업로드한 것으로 추정됨. 인

터넷 서점에서 단행본은 권당 4,500원, 전자책은 2,700원에 판매중임.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34번
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를 190 포인트에 판
매한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시간 57분을 스트리밍으로 제공
함. 2021. 4. 28.에 개봉한 최신 국내 영화이며, 네이버 시리즈 ON에
서 10,000원 대여, 14,900원에 구매 가능함.

(방송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74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을 8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1. 5. 22.에 방영한 161화 전체 분량인
약 86분을 mp4 파일로 제공함. tvN에서 2018. 4. 7.부터 현재까지
방영중이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2,200원 대여 가능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C, A 위원: 순번 41번~681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
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1번~68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
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
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59903호~60583호(순번 1번~681번)는 불법복제 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6. 9.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